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
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,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관련(안 제10조 및 제12조)

법 제9조제7항 후단이 제10항으로 이동되어 시행령에서 법 제9조제7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

나.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(안 제10조 및 제12조)

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근거 조문이 제159조에서 제176조로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, “공고하
여야”를 “공고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하
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공고하여야”
를 “공고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시
장·군수·구청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)를 “법 제9조제10항에 따라
시장·군수·구청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)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를 “「지방자
치법」 제176조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
중 “전단”을 “본문 또는 제9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(법 제9조
제7항 후단)”을 “(법 제9조제10항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한다)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,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· ⑤ (생략)

⑥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
시장·군수·구청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시·군·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등”이라 한다)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
의 승인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

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9.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(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)
10.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(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(생략)

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
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-----
----- 본문 또는 제9항-----

10. -----

--(법 제9조제10항)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401